

보도자료

2012년 10월 5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이재범 과장 (750-2570)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윤리팀 양청삼 팀장 (750-2760)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정보보호팀 이상훈 팀장 (750-2750)
 통신자원정책과 박시혜용 사무관 (750-2574) park_shw@kcc.go.kr
 네트워크윤리팀 성 열 범 사무관 (750-2763) ybsung@kcc.go.kr
 네트워크정보보호팀 김 신 겹 서기관 (750-2755) sgkim@kcc.go.kr

전기통신망을 통한 피싱(Phishing) 대책 마련

- 문자피싱, 보이스피싱, 가짜 인터넷사이트 대책 단계적 시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과 연계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가짜 홈페이지 등을 연계한 전자금융사기(이하 '피싱')에 대한 피싱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피싱신고 접수현황 >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집계)

피싱유형	2008	2009	2010	2011	2012.1~8월
보이스피싱	8,454	6,720	5,455	8,244	4,405
문자피싱	-	-	-	1,091	84,735
피싱사이트	2	4	8	2,094	5,693

* 2010년 이전 문자피싱 건수는 신고건수가 미미하여 집계에서 제외

1. 문자메시지 피싱 대책

① 휴대전화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경 제한

앞으로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10월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옵티머스G·뷰2, 갤럭시노트2, 베가시리즈(R3, S5, 레이서2)는 이미 시행)은 발신번호 변경을 할 수 없게 되고, 기존에 보급된 스마트폰의 경우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 종료, 디지털TV 방송시대 본격 개막 !

변경할 수 없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2분기 중에는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통신사업자가 전달과정에서 차단하고 그 사실을 문자 발송자에게 고지한다.

그간 국산 휴대폰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능은 특히 학생 간에 '문자폭력'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②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피싱 문자 차단

11월부터는 문자메시지에 '보안승급'과 같이 피싱에 자주 인용되는 문구가 들어가면 통신사업자가 이를 차단한다. 또한 내년 1분기 중에는 금융기관 전화번호 등을 발신번호로 사칭해서 인터넷 웹에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차단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를 위해 피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및 문구패턴을 분석하고 DB로 만들어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③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 식별기호 표시 및 고유번호 부여

내년 2분기 중에는 인터넷 웹상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본문에 특정 식별기호(예: ①)를 표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이 식별기호는 그 문자메시지가 휴대폰에서 발송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웹상에서 발송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휴대폰과 달리 인터넷에서 문자를 보낼 때는 회신 전화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에서 피싱과 문자폭력이 자주 발생했었다.

또한, 내년 3분기 중에는 피싱에 사용된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

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 종료, 디지털TV 방송시대 본격 개막 !

의 전달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번호를 통신사업자 및 대량 문자 발송자에게 부여하고 문자규격으로 적용한다.

2. 보이스포싱 대책

④ 공공기관 등 사칭 국제전화 호 차단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보이스포싱에 자주 사칭되는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내년 1월부터 외국에서 발신된 국제전화에서 이 번호가 사용되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 차단한다.

⑤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 해지 등 피해확산 차단

앞으로 보이스포싱 전화의 전달경로를 추적하여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삽입하지 않거나 해당 전화 호를 차단하지 않는 등 기술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은 직권 해지한다.

⑥ 국제전화 알림 및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

내년 2분기 중에는 스마트폰의 경우 국제전화가 걸려올 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벨소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유선전화 단말기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격을 표준화하여 출시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분기 중에는 통신사업자들이 국제전화 차단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개발해 이를 신청하는 이용자는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3. 메신저 피싱 및 피싱 사이트 대책

⑦ 메신저 가입인증 강화 및 피싱방지 자가점검 리스트 제공

내년 1분기 중에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 가입할 때 타인 명의 도용사례를 줄이기 위해 회원가입시 문자 발송을 통한 인증과정에서 인증 실패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내년 2분기 중 피싱방지를 위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⑧ 피싱사이트 신고절차 개선 및 차단 강화

10월부터는 피싱에 이용된 가짜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기관과의 핫라인을 가동하고 신고양식을 통일, 간소화한다.

4. 피싱 대응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내년 1월부터 전기통신망을 악용한 복합적인 피싱범죄 대책을 시행하고 보완할 전담기관으로 '피싱대응센터'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설치·운영된다.

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입법화 이전 가이드라인 시행

위에서 열거된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피싱대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전자금융사기(피싱) 방지 대책. 끝.

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 종료, 디지털TV 방송시대 본격 개막 !

전기통신망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사기(피싱) 방지 대책(안)

2012. 10.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목 차

I. 현황 및 문제점	2
II. 추진경과 및 실적	3
III. 중점분야 및 세부추진과제	4
1. 피싱 분야별 선제적 대응	5
가. 문자피싱 대책	5
나. 보이스피싱 대책	8
다. 메신저피싱 대책	11
라. 피싱사이트 대책	12
2. 법제도 개선	13
3. 피싱 대응기반 구축	15
4. 대국민 인식제고	17
IV.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18
V. 기대효과	20

1. 현황 및 문제점

- (신종수법 발생) 보이스피싱은 최근 감소추세이나, 문자(SMS)와 인터넷사이트 등을 연계한 피싱 건수는 급증



※ 피싱사이트는 금융권이 73%, 비금융권이 27%로 금융권 사칭 피싱사이트가 증가추세

- (사후대책의 한계)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의 특성상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사후대책으로 범죄 억제 및 예방 한계
- (법적 근거 미흡) 피싱방지 조치나 피싱전화 전달경로 추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싱 대책의 실효성에 한계
- (대응체계 미비) 복잡 다양한 피싱유형에 대응할 전담기구가 없고 방통위, 경찰청, 금융당국, 통신사업자 등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력 체계 미흡

시 사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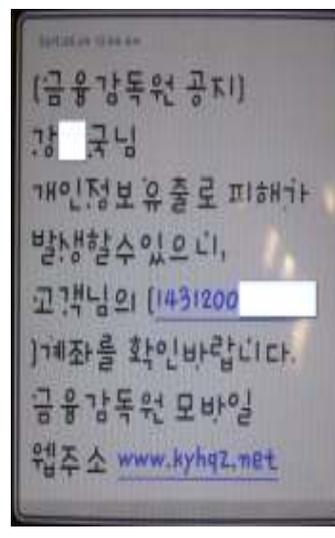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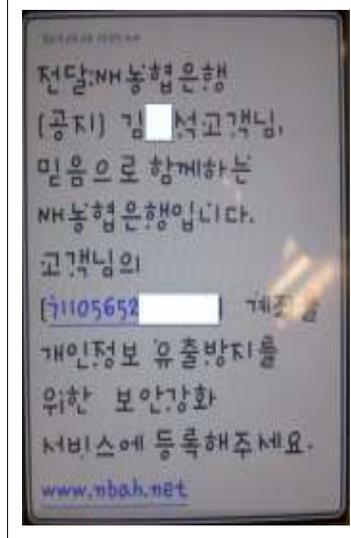
피싱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확보를 통한 전기통신망에서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중요하며, 피싱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필요

II. 추진경과 및 실적

-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 및 문자안내서비스 시행 ('09. 5월 ~)
 - ※ 주요 통신사업자가 PSTN 방식의 국제전화에 대해서만 일부 시행
-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발표 ('12. 4월)
 - ※ 총리실 주관으로 방통위, 법무부, 금융위, 경찰청 등의 종합대책, 대통령 보고
- 음성전화 관련 「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12. 7월)
 - ※ 통신사업자는 '13.1월부터 공공기관 사칭 전화 호 차단 등 합의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12. 9월)
 -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 호 차단 등 기술조치 의무화(18대 국회 폐기로 재 제출)

< 피해 사례 >

<사례1> 문자메시지 및 피싱사이트 URL 결합형태의 피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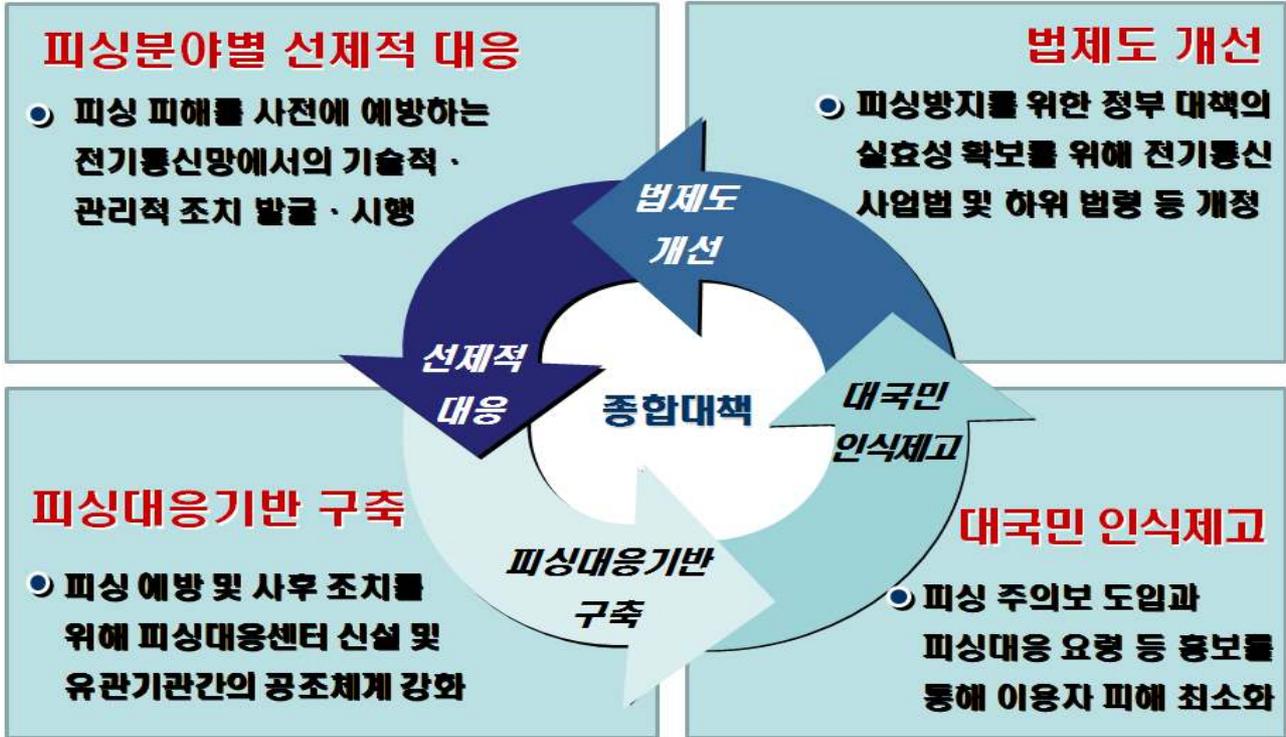
	<p>[금융감독원 사칭]</p> 	<p>[농협은행 사칭]</p> 
---	---	--

<사례2> 개인정보 파악 후, 가족 납치 상황극 피싱

- '12.6.5일 사기범은 경기 거주 이모씨(여, 40대)에게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발신번호 조작)로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이름과 학교 등의 정보를 말하면서 납치극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로부터 3백만원을 편취

III. 중점분야 및 세부추진과제

□ 4대 중점분야



□ 13개 세부 추진과제

4대 중점분야		13개 세부 추진과제
1. 피싱 분야별 선제적 대응	문자피싱	① 휴대전화 문자 발신번호 변경 제한
		② 인터넷 발송 피싱 문자 차단
		③ 인터넷 발송 문자 식별기호 표시 및 번호체계정비
	보이스피싱	④ 공공기관 등 사칭 국제전화 호 차단
		⑤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 해지 등 피해확산 차단
		⑥ 국제전화 알림 및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
	메신저피싱	⑦ 메신저 가입인증 강화 및 서비스 정책 개선
	피싱사이트	⑧ 피싱사이트 신고절차 개선 및 차단 강화
2. 법제도 개선	⑨ 피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용약관 개정	
3. 피싱대응기반 구축	⑪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피싱대응센터 신설	
	⑫ 통신사업자 이행실태 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	
4. 대국민 인식제고	⑬ 피싱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추진	

III-1-가. 피싱분야별 선제적 대응 (문자피싱)

① 휴대전화 문자 발신번호 변경 제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을 제한하고, 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당 문자를 이동사가 차단하고 이용자에게 고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외산 휴대전화와는 달리 국산 휴대폰은 문자메시지 발송 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어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번호변경을 통해 금융기관 사칭 문자피싱이나 타인 등을 가장한 문자폭력 등에 악용

□ 추진 내용

- (발신번호 변경 제한) 신규 출시되는 휴대폰은 발신번호 변경 기능을 제거하고, 기 보급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제거 추진
- (변경된 발신번호 차단) 이동사 교환기에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와 이용자의 실제 전화번호를 비교하여 번호가 변경된 경우 그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

※ 고지방법 : 차단 즉시 발신번호 변경으로 인한 문자발송이 불가함을 문자 안내

□ 추진 일정

- '12. 4분기 : 신규 출시 휴대폰에 대한 발신번호 변경 기능 제한
- '13. 2분기 :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 이동통신사 차단

② 인터넷 발송 피싱 문자 차단

피싱 문자메시지 차단시스템을 '13.1분기까지 구축하고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회신번호로 사용하고, 진짜 홈페이지와 유사한 URL주소를 사용하여 이용자를 현혹하는 문자피싱 범람
 - ※ 문자메시지 발송자가 자신이 수신받고자 입력하는 전화번호를 '회신번호'라고 함

□ 추진 내용

- 피싱에 주로 이용되는 전화번호, 문구 등을 수집하여 차단할 전화번호 DB를 구축하고 대량문자서비스 제공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 피싱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 차단
 - ※ 대량문자서비스 제공 사업자 : 웹 기반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사업자
- (피싱정보 수집)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피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피싱에 악용되는 전화번호 및 피싱 문구패턴 등을 확보하고
- (통신사 정보제공) 차단할 전화번호 및 피싱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등을 통신사에게 실시간 제공
- (피싱 문자메시지 차단) 통신사는 자사 가입자가 전송한 문자의 발신번호 및 문자내용을 필터링하여 피싱 문자메시지를 차단

□ 추진 일정

- '12. 4분기 : 문자내용 필터링을 통한 피싱 문자메시지 차단
- '13. 1분기 : 금융기관 등 사칭 피싱 문자메시지 차단

③ 인터넷 발송 문자 식별기호 표시 및 번호체계정비

인터넷에서 발송한 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기호 도입 및 문자피싱 발신지의 신속한 추적을 위한 식별번호체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 발송 문자 특성상 연락받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피싱 및 문자폭력 등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음
- 타인의 전화번호 도용 시 수신자는 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피싱 문자 추적에도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피해방지에 한계

□ 추진 내용

- (식별기호 표시) 수신자가 인터넷에서 발송된 문자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식별기호 등을 표시하여 차별화하는 방안 검토
 -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의 본문에 식별기호를 삽입(예시 ①)하거나 문자가 표시되는 화면의 문양 등을 휴대폰 발송과 다르게 표시
 - ※ 시범운영을 통해 차별 효과, 이용자 반응 등을 분석하여 본격 시행 여부 결정
- (식별번호체계 정비)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의 전달경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 문자메시지의 발송자와 전달경로상에 있는 중계사 및 이동사에 대해 별도 고유번호 부여(방통위는 사업자 고유번호 관리)

□ 추진 일정

- '13. 2분기 :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 식별기호 표시(시범도입)
- '13. 3분기 : 전달경로 추적을 위한 발송자 식별번호체계 정비

III-1-나. 피싱분야별 선제적 대응 (보이스피싱)

④ 공공기관 등 사칭 국제전화 호 차단

차단할 전화번호DB를 '12년말까지 구축하고 '13.1월부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해외에서 걸려오는 국제전화 호 차단

□ 현황 및 문제점

- 보이스피싱은 주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사칭하여 이용자를 현혹
※ 주요 사칭기관(순위별) : ①수사기관(26%), ②은행(16%), ③공공기관(6%), ④우편택배(5%)
- 또한, 발신번호 조작이 용이한 인터넷전화(VoIP) 사용 등 전기통신 환경의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악용

□ 추진 내용

- 공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발신번호가 조작된 국제전화 호 차단
 - (전화번호 등록) 피싱방지사이트를 개설하여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차단하고자 하는 해당기관의 전화번호를 직접 등록
 - (통신자 정보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주요 통신사업자와 회선연동을 통하여 번호조작 차단 DB를 실시간 제공
 - (조작된 번호차단) 통신사업자는 해외발신 전화번호가 번호조작차단 DB의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 해당 전화 호 차단
※ 차단시스템의 구축비용을 고려하여 별정사업자의 전화 호도 기간사업자가 대신 차단

□ 추진 일정

- '12년 4분기 : 공공기관 등 차단할 전화번호 DB 구축
- '13년 1분기 :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국제전화 호 차단

⑤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 해지 등 피해확산 차단

이용자의 피해신고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 호의 전달경로를 신속히 추적하여, 이용자의 2차 피해 확산을 차단

□ 현황 및 문제점

- 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여 보이스 피싱이 발생한 경우 동일 수법에 의한 이용자 피해 확산 우려

□ 추진 내용

- 보이스피싱 발생 시 범죄에 이용된 전화 호의 전달경로를 신속히 추적하여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 등을 해지

※ 전달경로 추적 및 피싱에 이용된 회선 차단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

- (피싱정보 공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경찰청, 금감원 등에 접수된 피해신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피해사례 분석
- (전달경로 추적)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여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전화 호의 전달경로를 추적하여 최초 전달사업자 확인
- (사업자 관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가입자 회선 즉시 해지 및 기술적 조치 미이행 사업자인 경우 행정조치 추진

- 전화·문자 피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개발·보급

□ 추진 일정

- '13년 1분기 : 유관기관간 신고정보 공유 체계 구축
- '13년 2분기 : 피싱신고 등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 앱 개발

⑥ 국제전화 알림 및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

이용자가 국제전화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국제전화 알림 및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부가기능 개발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이동전화 단말기로 국제전화가 걸려 오면 화면표시창에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가 표시되고 있으나,
 - 유선전화 단말기의 경우 문자표시 기능이 대부분 없으며, 국제전화 수신에 없는 이용자를 위한 국제전화 수신거부 서비스도 부재

□ 추진 내용

- (단말기 기반) 이동·유선전화 단말기의 사양 변경을 통해
 - ※ 001, 009 등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 도입으로 국제전화 여부 식별 여건이 조성
 - 국제전화 수신시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벨소리가 날 수 있도록 부가 기능 개발(유선전화의 경우 문자표시 기능 포함)
 - 단말기 설정으로 국제전화를 거부하는 ‘국제전화 차단’ 기능 개발
- (통신망 기반) 유선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부가서비스로 ‘국제전화 수신거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유도
 - ※ 국제전화호 수신시 수신거부 안내멘트 송출 후 전화 호를 차단하는 부가서비스

□ 추진 일정

- ‘13년 2분기 : 단말기 기반 국제전화 알림 기능 등 개발 추진
- ‘13년 3분기 : 유·무선사업자의 국제전화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

III-1-다. 피싱분야별 선제적 대응 (메신저피싱)

⑦ 메신저 가입인증 강화 및 서비스 정책 개선

메신저 서비스 이용시 피싱방지를 위한 본인 인증강화, 서비스 사업자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등 이용환경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음성전화나 문자와 달리, 메신저는 친구기반 통신이 바탕이 되므로, 친구를 가장하여 피싱을 시도할 경우 피해우려가 큼
- 제3자가 수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 환경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추진 내용

- 타인 명의를 도용한 메신저 피싱 등의 악성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 인증 강화 및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서비스 제공
 - (본인 인증 강화) 회원가입 시 SMS 발송을 통하여 인증하는 경우, 인증 실패 제한 횟수 조정 등 본인인증 체계 강화
 - (화이트리스트 운영)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로 친구로 등록한 이용자로부터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화이트리스트 기능 제공
- 사업자가 각종 신규 서비스 오픈시 피싱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점검할 항목들을 정의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 추진 일정

- '13년 1분기 : 메신저 서비스 가입시 본인인증 강화
- '13년 2분기 : 피싱방지 체크리스트 제공 및 이용실태 점검

III-1-라. 피싱분야별 선제적 대응 (피싱사이트)

⑧ 피싱사이트 신고절차 개선 및 차단 강화

피싱사이트 신고양식을 통일, 간소화하여 차단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사이트 차단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문자피싱이 급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탈취를 통해 계좌인출, 불법대출 등의 2차 피해 발생
※ 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 신고 건수 : ('10년)1건 ⇒ ('11년)233건 ⇒ ('12년 1~8월)4,158건
- 동일 사이트에 대한 중복 신고로 시간 낭비 발생과 부정확한 신고로 인하여 피싱사이트 차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음

□ 추진 내용

- (신고절차 개선) 피싱사이트의 신속정확한 검증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핫라인 가동 및 신고 양식을 통일하여 검증 소요 시간 단축
- (피싱사이트 차단) 차단 주체인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피싱으로 신고된 사이트의 도메인 및 해당 IP주소 차단 요청
※ 신고접수후 1시간 이내 차단을 목표로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및 차단 독려
- (모니터링 강화)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의 피싱사이트 차단 시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추진 일정

- '12년 4분기 : 피싱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 '12년 4분기 : 인터넷사업자 차단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III-2. 법제도 개선

⑨ 피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전기통신사업자의 피싱 전화 호 차단 등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제84조)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피싱이 범망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신번호를 조작·발신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범죄조직 추적·처벌이 곤란한 상황
- 피싱전화(문자)에 대한 차단 등 통신사업자의 역할이 피해방지에 효과적이나, 법적근거가 없고 자율적 시행 유도에 한계

□ 추진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전화번호 조작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
 - 정당한 사유없이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 호를 차단하고, 해외발신 전화인 경우 안내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 의무 부과
 - 법령상의 의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 통신사업자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방통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한 부여 등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김희정 의원 등 16인)으로 발의
- (관련 하위법령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세부 이행 방법 및 절차, 이용자 보호조치 사항 등을 시행령 및 고시에서 구체화

□ 추진 일정

- '12. 4분기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13. 2분기 :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마련

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용약관 개정

법 시행 이전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 해지 등을 위한 이용약관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령 개정 등 법 시행에 장기간 소요되어 공백 기간이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피해 발생 우려
- 현행 이용약관에는 피싱에 따른 계약해지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피싱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실정
 - ※ 피싱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및 제재방법·절차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가 미약하고 가입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이 사업자별로 상이

□ 추진 내용

- **(가이드라인 마련)** 문자피싱, 피싱사이트 등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 금융기관 등 사칭 문자메시지 차단, 휴대전화에서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시 차단 후 고지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 ※ 음성전화 서비스 대상 ‘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은 기 마련(‘12.6월)
- **(이용약관 개정)**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 계약해지 등 피싱행위 적발 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이용약관에 반영
 - 피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해서는 재가입 및 타 통신 서비스 추가 가입을 한시적으로 금지 등의 조치내역
 - ※ 스팸의 경우 “스팸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기 시행중

□ 추진 일정

- ‘12. 4분기 : 문자피싱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 ‘13. 1분기 : 통신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III-3. 피싱 대응기반 구축

⑪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피싱대응센터 신설

전기통신망에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피싱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에 '피싱대응센터'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피싱수법이 전기통신망의 기술적 취약점과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치밀해지는 등 날로 진화
- 전기통신망을 악용한 복합적인 피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관 부재로 피싱대응의 효율성 저하

□ 추진 내용

- 전기통신 인프라를 이용하여 복잡·지능화되고 있는 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피싱대응센터' 신설
 - (인력 구성)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유해사이트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력풀 구성·운영
 - ※ 기존 인적자원 활용 및 피싱방지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 총원(15명, 상담원 포함)
 - (주요 업무) 피싱방지시스템 구축·운영, 피싱 상담, 통신사업자 이행 실태 확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종 피싱수법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사업자 기술지원, 대국민 홍보 등

□ 추진 일정

- '12년 4분기 : 센터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 '13년 1분기 : '피싱대응센터' 신설 및 대응업무 추진

⑫ 통신사업자 이행실태 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피싱피해를 원천적으로 근절

□ 현황 및 문제점

-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수가 수 백개에 달하나 담당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한계
- 피싱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응이 통신, 금융, 수사 등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어 원천적인 피싱 근절에는 한계

□ 추진 내용

- **(사업자 정기점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정기 점검
 -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및 법적 의무사항을 공지하여 자율 시행을 유도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추진
 - ※ 피싱신고 및 차단시스템 결과 등을 심층 분석하여 법 위반 수위가 높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별도 추진
-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체계적인 피싱대응을 위하여 통신부문 피싱방지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계도 강화
 - 통신분야 협의회 운영을 통해 피싱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과의 신고정보 공유 및 공동 대책 발굴·시행
 - ※ 경찰청, 금감원, 권익위의 피해신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이용자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 및 피싱기법 분석·대응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

□ 추진 일정

- '13년 1분기 : 통신분야 피싱방지협의회 구성·운영
- '13년 2분기 : 상반기 통신사업자 이행실태 점검(반기별)

III-4. 대국민 인식제고

⑬ 피싱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추진

날로 새롭게 진화하는 피싱수법에 대비하여, 신종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이용자의 적극적인 대처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그간의 홍보는 신종피싱 출현 이후 국민들이 인지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신종수법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인터넷 등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피싱수법 및 대응요령을 알려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채널 다양화 필요

□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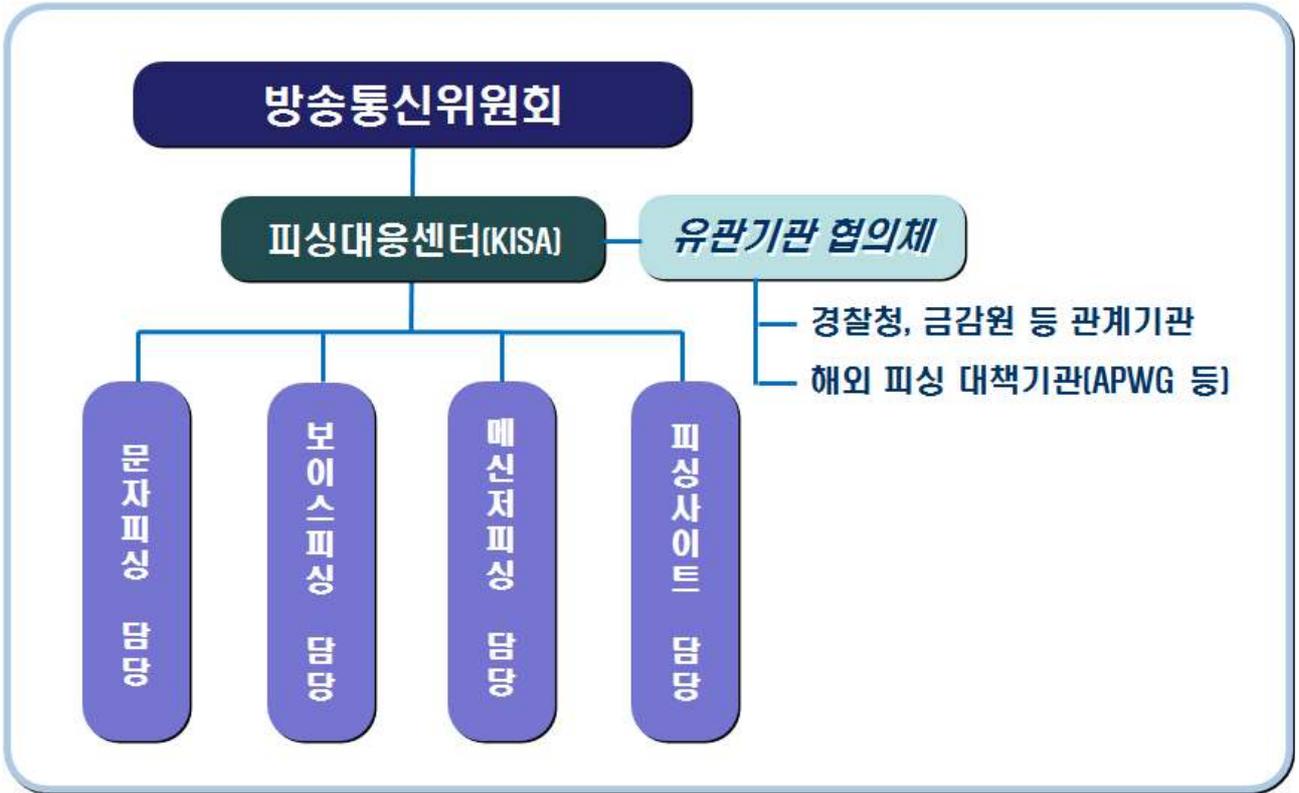
- **(주의보 발령)** 피싱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신종 피싱수법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국민 주의보 발령 추진
 - 관계기관에 신고되는 피싱정보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SNS 등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통해 신속히 전파
- **(홍보 강화)** 신종피싱수법 및 예방요령을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민관이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전개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피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 추진 일정

- '13년 1분기 : 대국민 피싱 주의보 및 홍보 방안 수립
- '13년 연중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추진

IV.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 추진체계



구 분	주요 역할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싱방지 대책 기본계획 수립 ○ 피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배포
피싱대응센터(K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호조작 차단DB 구축/운영 ○ 피싱 신고접수 및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 전개 ○ 사업자 기술지원 및 이행실태 점검
문자피싱 담당	○ 문자피싱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보이스피싱 담당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메신저피싱 담당	○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피싱사이트 담당	○ 피싱사이트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유관기관 협의체	○ 국내외 피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운영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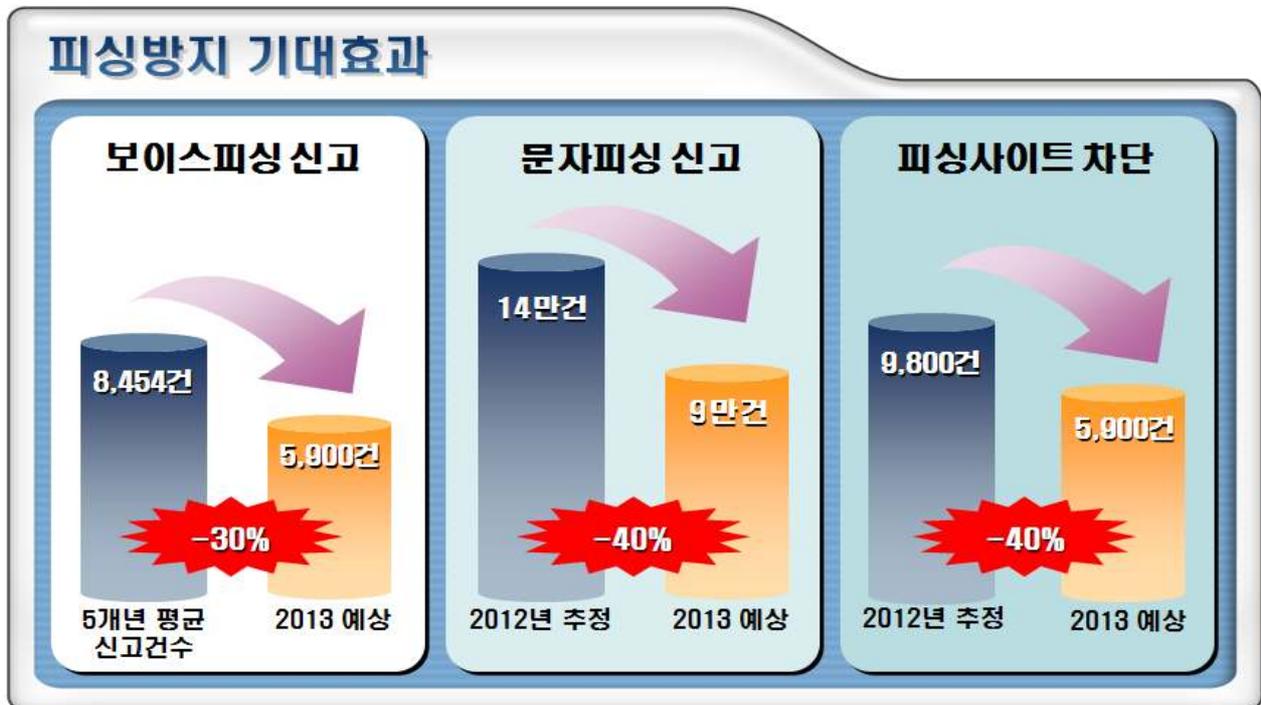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정부	민간 (추정)
1. 피싱 분야별 선제적 대응	< 문자피싱 > ① 휴대전화 문자 발신번호 변경 제한	-	6,600
	② 인터넷 발송 피싱 문자 차단	200	2,200
	③ 인터넷 발송 문자 식별기호 표시 및 번호체계정비	50	-
	< 보이스피싱 > ④ 공공기관 등 사칭 국제전화 호 차단	700	14,500
	⑤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 해지 등 피해확산 차단	-	-
	⑥ 국제전화 알림 및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	70	8,000
	< 메신저피싱 > ⑦ 메신저 가입인증 강화 및 서비스 정책 개선	70	-
	< 피싱사이트 > ⑧ 피싱사이트 신고절차 개선 및 차단 강화	280	-
2. 법제도 개선	⑨ 피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
	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용약관 개정	-	-
3. 피싱 대응기반 구축	⑪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피싱대응센터 신설	-	-
	⑫ 통신사업자 이행실태 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	-	-
4. 대국민 인식제고	⑬ 피싱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추진	-	-
합 계		1,370	31,300

※ 인터넷 발송 문자 식별기호 표시 및 번호체계 정비 등은 사업자의 투자비용 추정이 어려워 제외

V. 기대효과

□ 피싱으로 부터의 이용자 피해 최소화

- 피싱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는 물론 피싱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향후 발생 가능한 피싱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피싱피해 발생에 의한 미래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보이스피싱의 경우, 연간 200억원 이상의 피해 감소 기대(건당 피해액 1천만원 산정)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환경 조성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투명성 제고로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폭언, 협박 등의 전화(문자) 폭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사회 구성원간에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추진일정

추진 과제	세부 추진과제	'12년		'13년				주관부서
		3/4	4/4	1/4	2/4	3/4	4/4	
1. 피싱 분야별 선제적 대응	< 문자피싱 > ① 휴대전화 문자 발신번호 변경 제한	■	■					통신자원정책과
	② 인터넷 발송 피싱 문자 차단	■	■					통신자원정책과 네트워크윤리팀
	③ 인터넷 발송 문자 식별기호 표시 및 번호체계정비	■	■	■	■	■	■	통신자원정책과 네트워크윤리팀
	< 보이스피싱 > ④ 공공기관 등 사칭 국제전화 호 차단	■	■					통신자원정책과
	⑤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 해지 등 피해확산 차단	■	■	■	■	■	■	통신자원정책과
	⑥ 국제전화 알림 및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	■	■	■	■	■	■	통신자원정책과
	< 메신저피싱 > ⑦ 메신저 가입인증 강화 및 서비스 정책 개선	■	■	■	■	■	■	네트워크윤리팀
	< 피싱사이트 > ⑧ 피싱사이트 신고절차 개선 및 차단 강화	■	■					네트워크 정보보호팀
2. 법제도 개선	⑨ 피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	■	■	■	■	통신자원정책과
	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용약관 개정	■	■					통신자원정책과 네트워크윤리팀
3. 피싱 대응기반 구축	⑪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피싱대응센터 신설	■	■					통신자원정책과
	⑫ 통신사업자 이행실태 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	■	■	■	■	■	■	통신자원정책과
4. 대국민 인식제고	⑬ 피싱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추진	■	■	■	■	■	■	부서 공통



전자금융사기(피싱, Phishing)

- (개념) '개인정보(P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을 이용,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현혹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
- (피싱유형)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부터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토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날로 진화
 - (보이스피싱)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
 - (문자피싱) 스마트폰 환경에서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하면서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URL로 접속토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 (메신저피싱) SNS, 모바일(또는 PC) 기반 메신저 등 신규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금전 차용 등을 요구 하는 수법
 - (피싱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